

○ 모사전송 : 0505-480-1626

○ 기 한 : 2020년 12월 28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20. 12. 04.

수 신 : (주)그린위드(113-81-88107), 대표이사 김주학(601020-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그린위드(113-81-88107) 대표이사 김주학(601020-1*****)					
	주 소	(우 0820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15-0 (신도림동, 대동정밀 공장) (우 0417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110동 603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질병관리본부 수요 [붙임]의 '백신' 입찰 및 계약 건에 대하여 담합으로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함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김미현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전화	070-4056-7186	
		E-Mail	cutemhk@korea.kr		팩스	0505-480-1626	
	제출기한	2020년 12월 28일(월) 18:00 까지					

●소방청공고제2020-18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4호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방치선박 제거 재공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매립공사부지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새만금개발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마감일(2020년 12월 21일)까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로 연락(063-733-1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고기간 : 2020.12.공고일 ~ 2020.12.21.
 2. 제거대상 방치선박 명세

관리번호	구 분	재 질	중 량	방치장소	비고
2020 1-1	방치선박	FRP	5ton 미만 추정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2020 1-3	방치선박	FRP	5ton 미만 추정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2020 2-1	방치선박	FRP	5ton 미만 추정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044-1 앞 공유수면 일원	